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u>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u>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p> <p>제12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제21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3. <u>이를 어길 시에는 3일 동안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올 수 없다.</u></p>	<p>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①-----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u>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u>-----.</p> <p>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p> <p style="padding-left: 20px;">3. <u>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u></p> <p>제21조(통신기기 관리) ----- -----.</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제22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에 의거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사기진작과 교풍을 수립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방침)

<신 설>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사항(학생 생활, 학교 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이 되며 담당 업무자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22조(목적) -----

----- 제27조(징계)에 의거 징계 사항 및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

제23조(방침)

4.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은 선단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11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을 따른다.

1. -----(학생 생활, 학교 폭력 예방, <삭제>, 징계 등)을-----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담당 업무자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가.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

4.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생활교육 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한다. 단, 위원회는 재적 의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 6 장 징계

제25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기능 및 임무)

2.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 모범, 선행, 효행 및 기타 행동 발달과 관련된 학생 표창 대상자 선정

한다.

다. 위 원: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담당 업무자, 학년 부장, 상담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라. 기 타: 위원은 아니나 교원 중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및 담당 업무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4.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생활교육 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한다. 단,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징계

제2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및 임무)

2. 위원회 위원은 -----
-----.

<삭 제>

제26조 (사안 설명 및 심의)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29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1.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안전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년부장(해당 학년), 해당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교육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담당 교사는 회의를 주관한다.

제34조(징계 절차)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26조(사안 설명 및 심의) -----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9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

제32조(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삭 제>

<삭 제>

제34조(징계 절차) ----- 학생생활인권규정 ---

-----.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u>확인</u> 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안전생활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 고 면담하여 판단 •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 적 · 인권적 측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 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 되는 사안이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의 지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사안이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 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회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 ·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담당 교사는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u>사실</u>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u>현장지도 또는</u>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안전생활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 고 면담하여 판단 • 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 · 인권적 측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u>사실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u>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생 및 그 보호자</u>에게 권리 고지 조사 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지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 음을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 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u>실시함</u>. - <u>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 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u>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u>보호자 에 의한 작성</u>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u>대상 학생의</u> 서명이 있어야 함.
<u>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 ·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u>위원회 준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담당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u>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자기 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u> 등, 기타 학생

(징계 의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 변론서 등)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징계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고지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개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장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징계 조치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징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 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징계 조치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징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징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정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징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참고 사항) • <u>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u>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 <u>개최 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 으로 간주됨을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담당교사의</u>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징계 조치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징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 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징계 조치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징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징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u>위원회</u>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징계 대상 학생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개최	결정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징계 조치 결정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협의록 작성	결정사항(조치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단 계	내 용
재심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재심의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재심의 신청시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징계 대상 학생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개최	결정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위원회 개최를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협의록 작성	결정사항(조치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단 계	내 용
재심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함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함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재심의 신청시 학생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제36조 (행정심판 관련 절차) 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 조정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제37조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상담
2. 교내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10시간 이내 범위)
3.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의 교육 이수 기간에 따른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6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절차) 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행정 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 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37조(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내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10시간 이내 범위)
2. 사회 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25시간 이내 범위)
3. 특별교육 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8조 (징계자 교육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상담 - 학생 징계를 위하여 징계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 가. 학부모 상담은 담임 및 전문상담(교)사, 학교장, 교감과 실시한다.
 - 나. 필요한 경우에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권유할 수 있다.

<신 설>

2. (생 략)

3. 특별교육이수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제38조(징계자 교육 방법) -----

--.

<삭 제>

2. 사회 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 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가. 담당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1. (현행 제2호와 같음: 교내봉사)

3. 특별교육이수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

5. 교육감은 제31조 4항 및 5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7. 출석정지

<신 설>

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삭 제>

6. ----- 제38조에 따른 징계 조치-----

-----.
7. -----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39조 (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징계		
		학부 모 상당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8.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	
	9.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10. 생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수업	1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1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19.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근태	20. 평가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21.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2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3.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제39조(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8.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	○	
	9.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10. 생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u>뇌우침</u> 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수업	1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19.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근태	20. 평가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21.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3.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

구분	내 용	징계		
		학부 무단 상당	교 내 봉 사	특별 교육 이수
악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5.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27.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	
퇴폐 행위	28. 도박을 한 학생	⊙	⊙	⊙
	2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1.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32.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3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금품	35.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6. 금품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	⊙
사이 버 예절	37.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38. 등교 후 휴대 전화를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	⊙	⊙
	39.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왕따를 조장하는 언행 또는 욕설,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공개하는 학생	⊙	⊙	⊙
집단 행위	40.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4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구분	내 용	징계			
		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이 수	출 석 정 지
악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25.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27.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	○	
퇴폐 행위	28. 도박을 한 학생	○	○	○	○
	2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31.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32.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
	3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u>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u> 학생	○	○	○	○
금품	35.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6. 금품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	○	○
사이 버 예절	37.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38. 등교 후 휴대 전화를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	○	○	○
	39. <삭제>	⊖	⊖	⊖	
집단 행위	40.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4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제42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교육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 (징계 해제)

1.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학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해제는 교육 이수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해제한다.

제46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관련 서식)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관련 문서는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4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51조 (소지품)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휴

제42조(징계 경감) ----- 뇌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

제43조(징계 해제)

1. ----- 뇌우침이 뚜렷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
-----.
2. ----- 뇌우침이 뚜렷하다고 ----- 생활교육위원회-----학교장의 결재를-----
-----.

제4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문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활용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47조(기타)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장의 결재를-----.

제51조(소지품)

1. -----

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교사 대표로 교감, 교무부장, 안전생활부장 3인과 학부모 대표로 1인, 학생 대표 3인, 외부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제76조 (의결정족수)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는 재적 의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81조 (위원회 운영)

1. 규정의 개정은 개정 심의 위원회 재적의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 음란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등을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원위원은 3인과 학부모위원은 1인, 학생위원은 3인, 전문가(1인)으로 구성한다. 학생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76조(의결정족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81조(위원회 운영)

1.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 설>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11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83조(생활지도의 범위)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84조(조언)

제85조(상담)

제86조(주의)

제87조(훈육)

[학생에 대한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물품 분리 방법]

제88조(훈계)

제89조(보상)

제9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제91조(이의제기)

부 칙

제1조 (학교폭력규정) 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1.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규정) -----

-----.

<삭 제>

제2조(기타 사항)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라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